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제도

1. 목적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치료분과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신건강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를 배출하고, 인지행동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2.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

1)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로 구분함.

2) 자격기준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 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항.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1년 이상인 자	1항.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에 준하는 해외 임상사회복지 관련 자격 소지자이며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이며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과목을 2학기 이상 강의한 자
	2항.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워크숍 포함)을 20시간 이상(접수기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교육인정) 이수한 자	
	3항. 인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5사례)를 제출하고 사례심사를 통과한 자(1사례는 공개사례발표)	
	4항.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항.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워크숍 포함)을 20시간 이상(접수기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교육인정) 이수하고,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 3항. 인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5사례)를 제출하고 사례심사를 통과한 자(1사례는 공개사례발표) 4항.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세부
기준

◎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 경력이라 함은 자격 조건이 요구하는 기간 내, 매 1년 동안 3 사례 이상(6회기 이상)의 인지행동치료기반 치료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심사한다.
- (2)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증빙 서류
 -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
 - ②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③ 인지행동치료기반의 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강의 경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2학기 이상, 대학 및 대학원 교과목 내용의 7주 이상이 인지행동치료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심사한다.
- (2)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강의 증빙서류
 - ① 대학 학사 시스템에서 출력한 강의계획서
 - ② 기관장(학과장 포함) 확인서
 - ③ 기타 인지행동치료 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KCI 등재 학술지 이상에 인지행동치료 주제 논문을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총 연구자 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공동연구자도 인정)
- (2) 본 학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인지행동치료 주제로 학술발표(구연, 포스터 포함)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숍을 주도하는 것(이 항목은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1회, 관련 학회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2회를 수행하여야 함)
- (3)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저서 혹은 역서의 대표저자(출판물은 인지행동치료분과학회에서 심사)(저자 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공동저자 모두 인정)

◎ 사례심사용 치료종결사례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을 받은 사례
- (2) 사례는 최근 2년 이내, 회기 당 40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6회기 이상 진행된 종결사례
- (3) 집단치료는 1사례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2사례만 인정
- (4)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1사례는 1회기 축어록 또는 녹음(또는 녹화) 자료와 요약본을 함께 제출
- (5) 1사례는 공개사례발표를 포함
- (6) 기타 사례 제출 기준 및 양식에 대해서는 본 학회의 사례 제출 지침에 따름

◎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구술 또는 서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 유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자격인정 기간 동안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교육을 12시간(3년간 총 이수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자격인정 기간은 3년이며, 자격인정 기간 동안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중지된다.
승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기준에서 경력은 자격 취득 후로 환산한다.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을 유지하여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